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 -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 -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 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의2 규정에도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유권해석 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,
 -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안에 허용된 공동주택 용적률보다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이 포함됨을 명확히 기재하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